## 검 토 보 고 서

건 명	논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		
의안번호	제29호	제 출 자	민병춘 의원 등 5명
제 출 일	2024. 03. 13.	회 부 일	2024. 03. 13.

## 1. 제안이유

○ 논산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·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O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, 안 제2조)
- O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O 보조금 지원 (안 제5조)
- 지원중단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 ~ 안 제7조)
- 포상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
## 3. 검토의견

- O 이 조례안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과제인 저출산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,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통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,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「지방자치법」제28조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제10조,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2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